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5. 03. 25. 규정 제112호
개정	2017. 04. 07. 규정 제131호
개정	2017. 10. 11. 규정 제142호
개정	2018. 11. 20. 규정 제166호
개정	2019. 05. 07. 규정 제186호
개정	2020. 05. 13. 규정 제210호
개정	2021. 06. 04. 규정 제219호
개정	2025. 03. 27. 규정 제2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진흥원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원은 임원 후보자 및 임원의 연임 등의 적격성 심사 및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0.>

1.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결원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의결할 때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 단,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2017. 10. 11.>

1. 경기도 : 1명
2. 부천시 : 1명
3. 부천시의회 : 1명
4. 한국콘텐츠진흥원 : 1명
5. 이사회 : 3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만화문화산업분야 전문가

2. 만화관련 법인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변호사
 5. 문화예술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당해 진흥원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할 수 있으며, 원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② 위원회가 최종 추천자가 없음으로 공고한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후보자 서류 및 면접 심사
2. 임원 후보자의 이사회 추천

[전문개정 2017. 10. 1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진흥원 인사담당업무 주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 추천절차) ① 진흥원은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상근임원의 연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05. 07.>

③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부천시와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1.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2. 임원 후보자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⑤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집 마감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간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⑦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여 또는 참석한 임직원은 상근임원의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0.>, <개정 2021. 06. 04.>

⑧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의 응모했던 임원 후보자에 대하여 재공고시 응모를 이사회 의결 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0.>

제9조의2(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 원장 후보자는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0.>

1. 문화예술, 문화콘텐츠분야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경력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 최고 경영자로서 만화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 발전 전략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갈 의지를 갖추신 분
5. 만화 및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 하신 분
6.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하신 분

제9조의3(비상임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원장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 05. 13.>

1. 해당 종사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진흥원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역량

[본조신설 2018. 11. 20.]

[제목개정 2020. 05. 13.]

제10조(지원서 접수) ①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임원 후보자로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지원서류(지원서, 프로필 등)를 간소화 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13.>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 운영 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 자료 <개정 2018. 11. 20.>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심사한다.

1.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기관경영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진흥원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의 서류심사로 임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다만, 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병행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최종 임원 후보자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이사회에 추천할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심사표를 생략하고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13.>

③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위원별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 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연임 심의는 「정관」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18. 11. 20., 2025. 03. 27.>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진흥원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② 위원회가 임원추천후보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진흥원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명) 임명권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 또는 원장 및 그 직무대행자는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5. 03. 25. 규정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4. 07. 규정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11. 규정 제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0. 규정 제1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5. 07. 규정 제1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13. 규정 제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04. 규정 제2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27. 규정 제2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